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홍지선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그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하고,

화물 취급 거점이 권역별 서브 터미널 등으로 대형화·집적화되는 택배 산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0. 00. ~ 00. 00.)

3) 행정규제 : 없음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, 고시된 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별표 1 제2호 및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시설	면적이 3,000㎡ 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화물 분류시설을 갖추는 것
3. 장비 등	가. 주된 사무소와 영업점, 직영점, 화물 분류시설을 연계하는 화물 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

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“제2호가목에서”를 “제2호에서”로 하고, 비고 제3호를 삭제하며, 종전의 “제4호”는 “제3호”로 “제5호”는 “제4호”로 한다.

같은 표 비고 제4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화물취급소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표준계약서의 작성 등) ① <u>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(이하 “표준계약서”라 한다)를 작성·보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.</u> ②·③ (생략)	제29조(표준계약서의 작성 등) ① <u>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, 고시된 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	
연 락 처	(044) 201 - 4153